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 
조례안

【집행부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1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8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디지털정보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검토기간: 2024. 11. 6.(수) ~ 11. 15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 개정(2024. 3. 5.)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정의(안 제1조)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 규정(안 제2조)
-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규정(안 제3조)
- 구청장의 지도·감독 규정(안 제4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10. 3. ~ 10. 23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이 개정(2024. 3. 5. 공포)되어,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·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,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사이버안보 업무규정

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#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“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[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
2.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·폐지·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